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91호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 진흥 사업 추가,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관련 세부사항 및 사무의 위탁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해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4,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kimhk7@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

발의연월일 : 2026. 11. 18.

발 의 의 원 : 김원일・감규상・강길순・강창석・곽은정
구점득・권순재・김수민・문순규・박강우
박영주・박해정・박현재・백승규・변보미
이우완・전태완・전홍표・조은우・진형익
차중현・홍용채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 진흥 사업 추가,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관련 세부사항 및 사무의 위탁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해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를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을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9.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10.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제5조의 제목 “(경비지원)”을 “(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영리 법인·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그 경비”를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스포츠시설)”을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성화를 위하여”를 “활성화에 관한”으로, “기능을 수행하는”을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 계획 심의”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자문”을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및 제8조에 따른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 제목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연구·조사
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
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및 제8조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삭 제>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	<삭 제>

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 수립·시행해야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신 설>	10.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11. ----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비용 지원) ---------- ---------- 법인 또는 단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1.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3. 시민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제7조(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 활성화에 관한 ----------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
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1.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2.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및 제8조에 따른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원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3. ----------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위촉직 위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①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 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제8조(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연구·조사 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 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및 제8조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 **관련 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8.>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제8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위원명단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3. 그 밖에 창원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창원시의원 및 창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①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
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